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1. 31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7년 1월 25일

. 회부일자 : 1997년 1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134회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1997. 1. 31)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박경국)

가. 제안이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토요일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함(안 제13조1,2항 단서 및 제16조의1)
-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안 제18조1항, 3항)
-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3항)
-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함(안 제20조2항 및 제21조1항)
-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안 제20조3항)
-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 하도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8호 및 제23조9항)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 전 영)

충청북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근무시간에 있어서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하였고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기로 하였으며
-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하였고,
- 연가일수의 조문 내용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였으며,

또한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과 "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 연가계획 및 허가에 있어서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라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조문에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하던 것을 "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라는 내용으로 변경 하였으며,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데 다만, 의사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 병가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던 것을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 공가에 있어서는 "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하였으며
- 특별휴가의 조문에 있어서는 " 근속" 을 " 재직" 으로 " 장기근속휴가" 를 " 장기재직휴가" 로 " 근속기간" 을 " 재직기간" 으로 하고

“ 풍·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는 항목을 새로 신설 하였으며

-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조문 단서중 “ 1월” 을 “ 30일” 로 하였고
공무외의 국외여행 조문 다음에 “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을 겸직
허가 조문 다음에 “ 제5장 정치운동” 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 (참석인원 8인, 찬성 8인)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